

#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3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 학교에 대해 수업료 및 입학금 관련 업무 처리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모든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초·중등교육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 등 상위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문구에 맞게 정비하고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」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(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)를 중심으로 개정(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)

나.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법 제10조의2가 신설되어 조례 목적에 동 조문 추가(안 제1조)

다. 조문 전단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“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”고 규정하고, 후단 단서에는 법 제10조의2제3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“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의 대상”을 단일 조문으로 규정한 것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(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)

라. 현행 제4호와 같이 1개 호로 합쳐있는 “특수목적고등학교, 특성화

고등학교, 자율형 사립고등학교,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”를 별도의 호로 각각 구분(안 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)

- 마. 특성화고등학교는 재정결함보조를 받아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 해당되지만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이 부여된 학교로서 설립목적에 위하여 필요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“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”로 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2조제2항제5호)
- 바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을 준용하여 학교에서 휴업한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는 대상 기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확히 함(안 제3조제5항)
- 사. 공립·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이므로 동 학교에 대해 입학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(안 제3조)
- 아.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방법은 「유아교육법 시행규칙」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따르도록 함(안 제4조제1항)
- 자. 무상교육 대상 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학교에 전출입하는 학생에 대한 징수방법은 삭제하고,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할 계산 징수방법을 신설하여 업무 명확화(안 제4조제4항)
- 차.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서 전출하는 학생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아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,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에서 전출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일할 계산 반환 방법으로 현실화(안 제6조제2항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별첨 7
 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0조(수업료 등), 제10조의2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)
  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3조의2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)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(별첨 2)

다. 협의 : 예산담당관, 유아교육과, 진로직업교육과, 학교지원과

라. 기타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 1
- 입법예고(2020. 9. 4. ~ 9. 23.) 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(별첨 3)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(별첨 4)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(별첨 5)
- 학생인권영향평가 : 원안 동의(별첨 6)
- 관계법규 : 별첨 7

##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5조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공립·사립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징수금액) ① 공립·사립 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,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,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.

1. 유치원
2. 초등학교
3. 「초·중교육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학교
4.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
5.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
6.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
7.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
8.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

제3조(수업료·입학금의 면제·감액)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

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.

③ 휴학생의 경우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.

④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.

⑤ 지난 분기 또는 지난 달의 수업을 전부 휴업(방학은 제외한다)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달의 수업료를 면제한다.

제4조(징수방법) ①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「유아교육법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라 징수한다.

② 초·중등학교 수업료는 별표 1과 같이 4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와 다르게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③ 입학금은 학생이 입학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.

④ 학생이 제2조제2항의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. 다만, 유치원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.

1.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.

2.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.

⑤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하고,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.

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.

제5조(징수일) ① 수업료의 징수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, 해당 분기 또는 그달의 시작일 10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③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내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후로 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업료 등의 반환 등)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.

②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“반환사유”라 한다)에는 [별표2]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.

1. 법령에 따라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
2.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
3.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4.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5.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④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.

⑤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조(공고 등)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 1】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5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0조에 따라 <u>공·사립의 각급학교</u>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징수금액) <u>공·사립의 각급 학교</u> 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,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,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u>다만,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.</u>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6조의 <u>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</u> 중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학교</p> <p>4.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<u>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</u>, 영 제91조에 따른 <u>특성화고등학교</u> 및 영 제91조의3에 따른 <u>자율형 사립고등학교</u>, 영 제105조에 따른 <u>자율학교</u> 중 <u>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</u></p>	<p>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와 ----- 제10조 및 제10조의2----- <u>공립·사립 학교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징수금액) ① <u>공립·사립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사립학교</u>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.</u>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에 따른 ----- ----- -----</p> <p>4.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<u>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</u></p> <p>5. 영 제91조에 따른 <u>특성화고등학교</u> 중 <u>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</u></p> <p>6. 영 제91조의3에 따른 <u>자율형 사립 고등학교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5. (생략)</p> <p>제3조(수업료·입학금의 면제·감액)</p> <p>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<u>학교의 수업을 분기 또는 그달 전부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그달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.</u></p> <p>⑥ <u>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·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.</u></p> <p>제4조(징수방법) ① <u>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. 다만,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초·중등학교 수업료는 별표 1과 같이 <u>4분기(방송통신고등학교는 상·하반기)로</u>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<u>따로</u>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</p>	<p>7.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<u>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</u>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수업료·입학금의 면제·감액)</p> <p>① ----- ---<u>학생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<u>이나 그 밖의</u>----- ----- -----<u>에서</u>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지난 분기 또는 지난 달의 수업을 전부 휴업(방학은 제외한다)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달의 수업료를 면제한다.</u></p> <p>⑥ (삭제)</p> <p>제4조(징수방법) ① -----<u>와</u> <u>입학금은 「유아교육법 시행규칙」 제8조에 따라 징수한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<u>4분기로</u>----- ----- -----<u>이와</u> <u>다르게</u>-----.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입학금은 <u>학생의 입학시에</u> 전액을 징수한다.</p> <p>④ 학생이 <u>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 다.</u></p> <p>1. <u>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.</u></p> <p>2. <u>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.</u></p> <p>3. <u>제2조 단서의 학교에 전출입할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. 또한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, 영 제90조제1항제7호 및 영 제91조의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.</u></p> <p>1. (신설)</p> <p>2. (신설)</p> <p>⑤ <u>재입학,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,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.</u></p>	<p>③ -----<u>학생이</u>---- <u>할 때에</u>-----.</p> <p>④ ----- <u>제2조제2항의 학교에 전출입</u>-----<u>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. 다만, 유치원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.</u></p> <p>1. (삭제)</p> <p>2. (삭제)</p> <p>3. (삭제)</p> <p>1. <u>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.</u></p> <p>2. <u>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.</u></p> <p>⑤ <u>재입학이나</u> -----<u>재입학 또는 편입학</u>----- <u>계산하여 징수</u>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<u>징수한다.</u></p> <p>제5조(징수일) ① 수업료의 징수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, 해당 분기 또는 그달의 시작일 10일 <u>전으로 할 수 없다.</u></p> <p>② <u>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</u>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일은 <u>학기시작일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,</u>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<u>납부하는</u>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<u>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.</u></p>	<p>⑥ ----- ----- <u>계산하여 징수한다.</u></p> <p>제5조(징수일) ① ----- ----- ----- <u>이전으로 정할</u> ----- --.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</u> ----- ----- <u>학기 시작</u> ----- <u>정할</u>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내는</u> ----- ----- <u>지급일 후로</u> <u>정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6조(수업료 등의 반환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<u>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고,</u> 제4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<u>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입학허가를 받은 <u>자가</u>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</p> <p>3. 재학 중인 <u>자가</u>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</p> <p>4. 재학 중인 <u>자가</u> 휴학의 의사를 표</p>	<p>제6조(수업료 등의 반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제1호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</u>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사람이</u> ----- -----</p> <p>3. ----- <u>학생이</u> ----- -----</p> <p>4. ----- <u>학생이</u>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시한 경우</p> <p>5.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<u>당해</u> 학교에 입학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p> <p>④ 퇴학처분을 <u>당한 자</u>의 수업료 미납액은 <u>이를</u>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⑤ 자퇴한 <u>자</u>의 수업료 미납액은 <u>이</u>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공고 등)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<u>정한</u>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<u>늦어도</u> 신입생 입학원서 <u>접수개시일 10일전</u>에 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시행규칙)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5. ----- <u>해당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④ -----<u>받은 학생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⑤ -----<u>학생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7조(공고 등) ① -----</p> <p>----- <u>정하였을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접수 시작일 10일 전까지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8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</p>

【별첨 2】

#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2021학년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추진으로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는 공립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수입 감소 및 사립학교의 보전 비용 발생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미징수로 교육청 자체수입 감소
- 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 면제 시 재정 지원 필요
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, 「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무상교육 추진에 따른 재원은 국가(48%), 지자체(4.5%), 교육청(47.5%)이 분담

### 3. 비용추계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(2021)	2차년도(2022)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세입	○ 수업료 및 입학금(a)	△105,586,024	△101,045,825	△100,729,067	△101,784,927	△99,462,034	△508,607,877
세출	○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(b)	167,880,507	160,661,645	160,158,003	161,836,808	158,143,438	808,680,401
□ 총 비용(b-a)		273,466,531	261,707,470	260,887,070	263,621,735	257,605,472	1,317,288,278

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국비(48%)		131,263,934	125,619,586	125,225,793	126,538,433	123,650,627	632,298,373
지자체(서울시,자치구)(4.5%)		12,305,993	11,776,836	11,739,918	11,862,978	11,592,246	59,277,971
자체(47.5%)		129,896,604	124,311,048	123,921,359	125,220,324	122,362,599	625,711,934
합계		273,466,531	261,707,470	260,887,070	263,621,735	257,605,472	1,317,288,278

5. 작성자: 교육재정과 장서현(399-9632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2021학년도 입학금, 수업료 비용 추계
  - 대상학교: 공립·사립 무상교육 대상 학교
  - 학생수: 『2020~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』 자료를 활용하여 방송통신고, 각종학교 학생수를 별도로 추가하여 산출

※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제외

- 단가: 입학금(14,100원), 수업료(분기당 362,700원)

(단, 방송통신고 : 입학금 5,300원, 수업료 반기액 67,500원)

(단위: 천원)

구분	대상학교		대상 학생수			지원 항목		
	설립	학교수	전체 학생 (A)	특수교육 (B)	무상대상 (A-B)	입학금	수업료	
일반고	공립	93	207	61,160	1,070	60,090	260,399	87,178,572
	사립	114		87,737	164	87,573	381,179	127,050,909
특성화고	공립	17	70	9,396	95	9,301	42,511	13,493,891
	사립	53		26,861	4	26,857	120,358	38,964,135
특목고	공립	5		2,031	0	2,031	9,997	2,946,574
마이스터고	공립	2	4	862	0	862	4,216	1,250,590
	사립	2		937	0	937	4,526	1,359,400
방송통신고	공립	5		1,643	0	1,643	2,809	221,805
각종학교	공립	1		120	0	120	564	174,096
소계		292		190,747	1,333	189,414	826,559	272,639,972
합계							<b>273,466,531</b>	

○ 2022 ~ 2025학년도 추계

(단위: 명,천원)

연도	학생수	학생수 비율 ※	무상교육 대상 학생수	비용추계	비고
2021	213,164	100%	189,414	273,466,531	
2022	203,899	95.7%	181,269	261,707,470	
2023	203,397	95.4%	180,701	260,887,070	
2024	205,432	96.4%	182,595	263,621,735	
2025	200,823	94.2%	178,428	257,605,472	

※ 『2021 ~ 2025학년도 학생, 학교 배치 2.0 기본방향 안내(학교지원과-10729, 2020.7.30.)』 자료 기준  
연도별 학령인구 추계율을 반영해서 산정

#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검토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에 따라 2021학년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이 추진되기에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는 공립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수입 감소 및 사립학교 보전비용이 발생
-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미징수로 교육청 자체수입이 감소되며, 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 면제로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, 「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국가(48%), 지방자치단체(4.5%), 교육청(47.5%)이 나누어 부담함

## 2.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

- 전제 : 소용비용 추계기간은 2025년도이고 소요비용은 무상교육 추진에 따른 공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미징수로 인한 세입에서의 자체수입 감소분과 세출에서 사립학교 수업료 면제에 따른 재정 지원 필요분을 학령인구 추계율을 반영하여 산정

<비용 추계>

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 계
세입 감소분	105,586,024	101,045,825	100,729,067	101,784,927	99,462,034	508,607,877
세출 증가분	167,880,507	160,661,645	160,158,003	161,836,808	158,143,438	808,680,401
계	273,466,531	261,707,470	260,887,070	263,621,735	257,605,472	1,317,288,278

<재원 조달>

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 계
국비	131,263,934	125,619,586	125,225,793	126,538,433	123,650,627	632,298,373
지자체	12,305,993	11,776,836	11,739,918	11,862,978	11,592,246	59,277,971
교육청	129,896,604	124,311,048	123,921,359	125,220,324	122,362,599	625,711,934
계	273,466,531	261,707,470	260,887,070	263,621,735	257,605,472	1,317,288,278

### 3. 검토의견

-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으로 2019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고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전학년의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라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 대상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관련 업무 처리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
- 위 표와 같이 5개년도 간 총 1조 3,172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, 이 중 52.5%에 해당하는 6,916억원은 외부재원으로 충당하는 전제로 하고 있음
-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·책무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임
- 다만,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재원 중 정부 및 지자체가 부담분에 대한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의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까지이기에 법 개정이 없을 경우 2025년 이후로는 전액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재원을 부담하게 되기에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【별첨 3】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(제14조 관련)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	의 견 없 음	



##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<b>자치법규명</b>	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	
<b>평가담당</b>	감사관	행정6급	이지은
<b>입안주관부서</b>	교육재정과	<b>통보일</b>	2020.9.21.
<b>관련조문</b>	<b>검토결과</b>		<b>조치사항</b>
제2조(징수금액) 제3조(수업료·입학금의 면제·감액) 제4조(징수방법) 제6조(수업료 등의 반환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 조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및 정부와 우리 교육청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</li> <li>- 따라서 유치원, 특수목적고등학교, 특성화고등학교, 자율형 사립고등학교, 자율학교 등 수업료를 따로 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무상교육으로 인해 수업료 및 입학금과 관련이 없는 학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함</li> </ul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⇒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<b>“원안동의”</b> 함</p>		<b>원안동의</b>

【별첨 5】

<b>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</b>			
관리번호	2020A서울교육027		
정책명	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
	부서명	교육재정과	
	담당자명	장서현	전화번호 02-399-9632
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	2020년 9월 8일		
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(교육재정과)	「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」 전부 개정에 앞서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 특성 및 균형참여 반영, 성별통계 구축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항목별 포인트를 점검함.		
종합 검토 의견 (성별영향평가책임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
	<p>「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상위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문구에 맞게 정비하고, 무상교육 대상 학교 적용 규정은 삭제하고, 무상 교육 제외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함.</p> <p>소관 부서가 이미 점검한 바와 같이 개정안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, 성별특성 반영, 성별통계 구축,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.</p>		
검토의견 반영계획서	해당 없음		
<p>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0년 09월 08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담당자/연락번호 : 신지은/02-399-3910)</p> <p><b>교육재정과장 귀하</b></p>			

##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

<b>자치법규명</b>	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/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/ 일부개정		
<b>담당부서</b>	교육재정과	담당자	성 명 : 장서현 직 급 : 주무관 연락처 : 02-3999-632
<b>평가담당</b>	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	위원장 정병수	
<b>해당조항</b>	<b>검토결과</b>		<b>검토결과</b>
개정조항 전체	본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수업료 및 입학금 관련 행정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으로, 해당 조항에 대해 <b>원안 동의</b> 의견을 제출함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안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권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중단권고
<b>해당조항</b>	<b>참고의견</b>		
	해당 없음		

## 관계법규

### ■ 「초·중등교육법」

<개정 2013. 3. 23.> [전문개정 2012. 3. 21.]

**제10조(수업료 등)** ①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.  
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, 공립·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“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 [시행일]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

1. 2020학년도: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
2. 2021학년도 이후: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

**제10조의2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)**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(無償)으로 한다.  
1. 입학금      2. 수업료      3. 학교운영지원비      4. 교과용 도서 구입비  
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.  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.

### ■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

[본조신설 2020. 2. 25.] [시행일]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

1. 2020학년도: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
2. 2021학년도 이후: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

**제13조의2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)**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“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·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.